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이주현)

1. 제출경위

- 제출자 : 마포구청장
- 제출일 : 2018. 04. 02.
- 회부일 : 2018. 04. 04. (의안번호 : 18-30)

2. 제출이유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자활기금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일부 자활기금의 용도 확대
-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관계 법령에 의거 존속기한 5년 연장
- 상위법 개정 관련 조례정비 등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조문정비 등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 예산조치 : 향후 추가비용 발생없음
-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예고기간:2018.2.22~3.14)
- 기타사항 : 조례 개정안 시행관련, 규제·부패·갈등·성별 등 분야별 사전영향평가 협의사항의 경우 해당내용 없음

5. 검토의견

이건 조례는 생활이 곤란한 지역주민의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2003년 제정된 조례임.

상위 법령인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일부 추가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5.30일 만료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근거하여 2023.5.30일까지로 5년 연장하여 조례제정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개정된 상위법령의 반영, 사문화 조항의 삭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적용 등 조례를 현재의 상황에 맞게 정비하는 것임.

한편, 2.22일부터 28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 평가 등에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음.

따라서, 이건 조례의 일부개정은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참고자료

1.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18조의3 제1항(자활기금의 적립)
2.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설치)
3.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참고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약칭: 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18.3.13.] [법률 제15185호, 2017.12.12., 일부개정]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8.2.9.] [대통령령 제28627호, 2018.2.9., 타법개정]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설치)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② 기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은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약칭: 지방기금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전문개정 2011.5.30.]